

보도시점 (전매체) 6.18.(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상생협력기금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의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이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기금(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 * 기금 용도: (기존) ①성과배분, ②기술협력, ③인력교류, ④환경경영협력, ⑤임금격차완화, ⑥기금운용, ⑦생산성향상, ⑧기술보호, ⑨창업지원, ⑩판로확대, ⑪거래공정화, ⑫문화확산 → (추가) ⑬ 벤처기금(펀드) 출자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 (국정과제 30-2)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검토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한 것이다.

* 신청요건: (기존)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개정)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세부기준: (기존) ① 특정 재료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
 ②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3년 평균 이상 변동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어느 하나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 → (개정) 모두 삭제

이번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형철 (044-204-7920)
		담당자	사무관	지홍진 (044-204-7924)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이권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김연학 (044-204-7711)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담당자	사무관	박상엽 (044-204-7942)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의 용도)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1호에 따른 <u>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u></p>
<p>제14조의5(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생 략)</p> <p>② <u>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수탁·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수탁·위탁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직전 조정할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u></p>	<p>제14조의5(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가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2. (생략)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④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⑥·⑦ (생략)

제17조(분쟁조정요청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위탁 분쟁조정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5. (생략)

② ~ 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분쟁조정요청의 요청)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4. 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